충청남도 공고 제2023 - 108호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 17.

충청남도지사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2022.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 자활기업 법인시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지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지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 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②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④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⑤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⑦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방법

가.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구 분	최대지원기간	연간 지원한도금액	최대 지원한도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내 최대 2년	5 천만원	1 억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5 천만원	1 억원
인증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1 억원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 합산 하여 최대 3억원 가능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불가) 지원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신청한 후 약정체결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는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가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하도로 지원
-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 한번의 공모접수 기간에 단독형, 공모형으로 둘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치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워 ■

- (제도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유영체(이하 '유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충청남도에 신청서 제출
 -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나.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회차에 따라 신청, 총 사업비의 10~30%까지 자부담을 유지(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2회차(20%) 적용
 - 자부담은 연도별이 아닌 회차별 건별로 산정
 -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4회차 30%
 - ※ 예시) (2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						
사업비 중 보조	참여기업 자부담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지방비	(2천만원)				
(56백만원)	(24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부담)

다.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O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 6.(월) 18:00 (21일간)
 - ※ 온라인 접수미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신청서 제출'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접수시 신청불인정(미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 나.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시스템 등록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 사업설명회 개최

○ 때 · 곳 : 2023. 1. 27. (금), 14:00 / 예산청소년수련관(비전홀)

○ 참석대상 : 시·군 담당자,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주요내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가치(SVI)의 이해 등

○ 주관·주최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 선정절차 및 결과퉁보

가. 선정절차



※ 서류검토, 현장실사 결과 요건 미층족 기업은 심사 제외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

🚺 신청서류 및 중빙서류(시스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부가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1개 이상 타업체 비교견적서 필히 첨부)
 -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세부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 불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미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점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시항 있을 경우)
-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 1호의 5서식]
- ①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측정지표 서식 3, 6,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소식자료 > 빌긴자료 > 매뉴얼
 - ※ 자세한 내용은「2023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7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O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관련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도) 담당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3

- (접수) 시군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 521-5612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 750-2659
공주시	지역활력과	(041) 840-8598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 930-233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 950-4126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540-2078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 940-4074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660-2590	홍성군	경제과	(041) 630-1355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 746-6028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 840-2583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 670-616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 350-318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아쪼)

접수	<u> </u>			접수일			처리	니기간: <u>접</u>	수미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	적경제기	업 사업	개발비	지원	실사업	신청서		
지웕 연화	예비 사회적기	1업 □ 0	계비 1년차	□ 예비 2년	차		사희적경	제기업	□ 1년차 □ :	2년차
연차	사희적기업		인증 1년차	□ 인증 2년	차 🗆	인증 3				
	기관명						개표자(-		(-)
	소재지	[전)					연락처(- 법인등	로버승		
	인증(지정인가인 번호						시업자등	록번호		
	사업분야	1. 법령성	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상시근	도사꾸		
실험	조직형태	□ 사단 □ 공익 □ 협동 □ 영농	법인 □ 재단 법인 □ 비잉 조합 □ 사호 ··영어조합법(법인 □ 민법상 링리민간단체 □ 적협동조합 □ 인 □ 농업·어(] 사회복지] 협동조합	법인 □ 연합회	〕소비자성 □ 사회적	^낙 협동조합연합		
			<mark>이외 인정되는</mark> 으로 보는 단		(문화단체	=)				
	-101 0+1	□ 입인		<u>''세 □ 기타</u> 지역형 예비시			부처형 여	비사회적기업		
	기업 유형		적협동조합		□마을			자활기업		
	인증(지정)유		서비스 제공 사회 공헌형		자리 제공형 ☞[]) [∮ □ 혼합:	혀 🗆 7	타형		
전체	유급근론자수(/ 할 기정신청당		1717 000	명취	약계층 근로 약계층 고용	자수(F	B)	1-1-0		명 %
* 인증	장 및 시성신정당 자체고용		l유급근로지수	-(A) 취임	<u>약계증 고</u> 왕 취약계:	5비율(남 충근로지	B/A) 수 (B)	취약	약계층 비율(B/A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명				명	, ,,0 ,_ ,	%
괅걺	연도(회차) 연도(회차)			금액 금액				사업성과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사 업			금액				사업성과	=	
사업 개봉 개요	사업 총	· 흥예산	②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워신청금			(3)자투		
싦뒁	(①=②	+(3))	<u> </u>	원	12232	•				원
·11-11-	사업기	간 브랜드(로고)		년	월	일 ~ □ 홍토	<u>년</u> 1 교 관	월	일	
	<u> </u>	그런드(보고) 기술개발			원	□ 	 품제작	3-1-		원
۸۱-	용용도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	∥품제작 ≩공연기흑	Ú		원
		특허출원			원	□ 홈퍼	이지제적			원
		교육훈련비			- 원	<u> </u>	<u> 물제작</u> 사)		원
		구분	재정지	원 사 업 명	최초지원	김인		지원기간	지원연치	<u>.</u>
		예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사희적기업	사업개 전문 인	<u>발 비 지 원</u> ! 력 지 원				~	:	-
		-1-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종전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개 전문 2	<u>발 비 지 원</u> ! 력 지 원				· · ~ · · · · · · · · · · · · · · · · ·		-
	재정지원 사업		사 회 보 사 업	험 료 지 원				~		
	사업 참여여부	마을기업	기타(<u>비 지 원</u>)				~		
				비 비 지 원 강 비 지 원				~		_
		자활 기업	사 업 개	<u> 영 미 지 권</u> 발 비 지 원				. ~		
	-	타 부처,	기타(<u>)</u> 명 기재				~		
L		자치단체 소관	(소관 부처, 7	다치단체명 기재)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	^{치단체)} 명	지원받는 니	H용	지원기	간	지원금액	비고	$\dashv \bot$
* 중영		_ 기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하	_ 거나 유사한 재	정지원을 받	받고 있을	을 경우 기	기재(허위 기재시		가능)
	년도 사업개	발비 지원사인	법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	도자치단체장	귀하						_	IO →	

♦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5. 교육 이수 확인증(例, 예 중 택일)
- ②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때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벌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체결 제한 대상 및 거래 금지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동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 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 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sim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2) 사업성과
 -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충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 최초지원일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접수반	l s					7	실수일					처리기	7I:	전=	수미긴	일로 부		세1쪽)
			사하	저거기	제기업			JHI	TIQ	I A LC	Н							
지의	MILLI	사회적기			៕/ 급 비 1년차		크기 예비 2		시간	!^[i		신 경기 사회적경				1년차		크 숙기
지원 신청 연차		<u>사외식기</u> 회적기업	ഥ		<u>미 1년자</u> 증 1년차		<u>에미 4</u> 인증 2		⊆	!증 3			세기업	1		⊥년사	□ 24	크사
연사		주관기관 주관기관	 명	T	0 1011		LO 2	. C-1		:0 0			ᅫ표지	:}				
		신청기관											자(주민			(_)
		소 재 조											처(휴대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인등록t						
													자등록					
		사업분이	75	1. 법	려사 이저	되느	조지형	태				প্র	시근로기	4 +				
신청기 업		조직형태	태	2. 世	령상 인정 I단법인 □ 당익법인 □ 영동조합 □ 영농·영어조 령이외 인 법인으로 트	재단법 기비영 기사회 합법 (정되는 전는 단	한 및 인 리민간 역협동3 인 및 등 전 제 및	기법상 2 단체 □ S합 □ S업·어(형태]기타(조합 □] 사회복 협동조(업회사법 문화단체		사 🗆 인 🗆 희 🗆] 기티	유한희사 소비자 사희적(타 법인,	├ □ 합 생활협 협동조합 비영리	자조합 동조합 합연합 ³ 단체	 			
		7101 01	AN .		사회적기업				비사회	식기업		부처형 (예비사	회적기	업			
		기업 유형	-		시회적협동			올기업				자활기업						
	(d 9	<u>リ</u>)사회적 중(지정)	길업 유형		<u> </u>	제종	형 🗆	일자리	제공	<u> </u>	지으	역사회 공	당헌형(∄[] ,	9 [], @[])	
		기업명				1=1												
	별	법인등록변	<u> </u>															
과건 지원		업자 등록																
		기 지원홍																
	-	기 지원총			I													
사언		사업	3 명 총예산		_													
사업 개통 기용 개요		(D=C	2)+(3))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3)2	자부E	남금액				
개요			<u>원</u>					원										원
		사업		U = / = -		-		년	월	일	~	<u>년</u>		월	일			
				밴드(로: 즐개발	ц)				윤	! 	휾뵑	. 🗆 광고 팅						원
		_	□ 시경	상수요조	사				£		싧젯	품제작 공연기후	d					원
	사용용.	ᆂ		i 夫이						1 📅	홈페	일지제 ^조 물제작						0)
																		원
		71		국훈련비	l 재정지원/	IOIDI		+1	운 초지원일		기타	•() 지원기	171			지원	원
		구		일 7	<u>^11성시권/</u> 다 리 창		원		소시권점				<u>시권/</u> ~	ഥ			시전	24
		예비			<u>기 기 공</u> 걸 개 발	비지							. ~	•	· .			
		사희적	기업			<u>.</u> 벽 지	- 원						. ~					
				일 7	자 리 창	출조	원						. ~					
		인			걸 개 발	비ᄌ							. ~					
종	전	사희적	기업			벽 지	원						. ~					
종 재정 사(참여(지원				희 보 험	<u>료 ㅈ</u>		<u> </u>					. ~					
참여	겨부	마을	기업	사 기 E	<u>업 비</u>	지	<u>원</u>						. ~	•	•			
					<u>「</u> 계 설 비	비ㅈ							·~	•	•			
					게 <u>크 디</u> 널 보 강	비ㅈ		 				· · ·	· . ~	•				
		자활기	기업		<u> 0</u> 걸 개 발	비ㅈ							. ~					
				기ㅌ	! ()						. ~					
		타		(A TI	나업명		7170						. ~			.		
	-N 71-1	자치단체			<u>부처, 자치</u>			TII 72 71	016 =		-	· ·		-1-0			.i - i	
* 중앙					터 동일하				권을 믿	ᅶᄊ	= 6	3주 기시	비(허위	기새기	기 구:	강우급 7	서리 가	5/
	년도	- 사업개	발비 지원	원사업어	위와 같(기 신청	합니다 년	l. 월	일			.14	JOI:			(4	01)
기초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	3인:			(서년	병 또는	인)

□ 주관기관명		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ŀ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IA3IA(0)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참여기업 (2)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②[], ④[], ④[]) □ 혼합형 □ 기타형	
	기어대		바이드로바송
	기업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색시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사입사궁목인으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정시 <u>근</u> 도사구 명	기 시권·첫구 희	기 시권용택
참여기업 (3)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秒[], Φ[], ⊕[]) □ 흔합형 □ 기타형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참여기업(4)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③[], ④[], ⑤[]) □ 혼합형 □ 기타형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찬여기연 (5)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참여기업(5)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③[], ④[], ⑥[]) □ 혼합형 □ 기타형	

♦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회적첩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5. 교육 이수 확인증(개, 대 중 택일)
 - ♠ 사회적기업 통한정부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한정부시스템 ID 제출)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④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 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6. 하국사회적기업진흥워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 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 시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체결 제한 대상 및 거래 금지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sim}500\%$ 이내에서 제재부가 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사업성과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 3) 최초지원일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예비·사험·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기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목	투 □공동형)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사용용도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 □ 목표 매출액(사업종	· · · ·								
	1) 필요성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	<u></u> 런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	S가, 지역내 인지도 향	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	적 수치로 명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Л	1차교부	2차교부
합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고
세부사업명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 [=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	기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 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호 (휴대폰)	

<별지 제6호 시식> 신청기업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사회적 가치측정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i>작</i>	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팀	병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 증(지정)번호	작성요형	병4 참조	인증(지정)유형	<i>작</i>	성요령4 참조
전 화번 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구 분	2020년	202	1년	2022년
매출 및	매출액				
영업이익 (단위: 천원)	영업이익				
(211-22)	당기순이익				
-0-1-	구분	2020년	202	1년	2022년
고용현황 (단위: 명)	총 근로자 수				
(E11- 8)	취약계층				
		름없이 작성되었	된 모든 내용; 었다는 것을 확		
	el] = +l	<u>20 년</u>		lml)	
	대표지	<u> </u>	(/	付명)	

※ 작성요령

- □ 공통사항
-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3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2년)을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 신청서 첫 번째 장
-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 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 부운 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 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증빙서류

-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2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판단기준	착안사항			
	고	나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등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리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 항목만 작성 등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기업 항목만 작성		
내부운영의	의 '참고자료 - (고용) '22.1	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 2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 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사회 가치 (5 점)	영 상 사회적 - 기업이 추구	실현노력(기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내부운 작가치 실현수준 등을 기재 하는 사회적가치 및 미션·비전 등에 따라 추진한 관련 활동 및 기타 기재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		
	③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차원에서의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 진료 지원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실시내역 유무 등			
	④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활동 사례 등			
		스의 사회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현기체] 기업이 생사하는 제품 사비스를 이용되고 사용하으로써		
		·회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외역가지 구군을 시골 처) 상기 항목 외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재하고, 그 수준을 서술		
외부 운영	[기업 작성예시]			
에품·서	구분 내용(에시)			
비스 및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이용자)의	│ │ 제품 │ 생산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사회가치	서비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10 점)	ᆝᆝᄼᅟᅟᆝᇎᆅ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Ol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용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자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		

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타

측정지표	6.	사회적	화워	노력도
7014	ι υ.	7147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 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 활 동 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 대상연도(2022년)와 전년도(2021년)의 유급 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근로자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1, 22년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 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2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정기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간접지급 내역은 불인정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2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22년도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2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2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2년 내)

증빙서류

- 조직 내부활용: 2021년,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2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21년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22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22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 2022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최근 2년간(2021년, 2022년) 실적 기입

증빙서류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신청서 양식]

- ①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 ②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 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